

# 공인경기지도자규정

사단  
법인

대한철인3종협회

제정 2006. 01. 23.  
개정 2020. 09. 18.

## 제1장 공인 경기 지도자

**제1조(정의)** 공인 지도자 (이하 “지도자”라 칭함)은 심신이 건전하고 법적 결격사항이 없으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본 협회가 주최하는 트라이애슬론 경기지도자연수회 과정을 이수하고 탁월한 식견과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하여 자격증을 부여한 지도자를 말한다.<개정 2020.09.18.>

**제2조(구분)** 본 종목 경기 지도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개정 2020.09.18.>

1. 1급 전문 스포츠지도사<개정 2020.09.18.>
2.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<개정 2020.09.18.>
3. 1급 생활 스포츠지도사<신설 2020.09.18.>
4. 2급 생활 스포츠지도사<신설 2020.09.18.>
5. 유소년스포츠지도사<신설 2020.09.18.>
6. 노인스포츠지도사<신설 2020.09.18.>

**제3조(자격)** ① 체육지도자연수원의 전문스포츠지도사, 생활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20.09.18.>

**제4조(권한)** ① 본 종목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다음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.<개정 2020.09.18.>

1. 국가대표 감독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 단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으로 감독이 된 사람은 국가대표 지도경력이 2년이상이거나, 체육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, 2년 이내에 1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.<개정 2020.09.18.>
  2. 체육지도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는 본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지도자연수회의 강사로 위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- ② 본 종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다음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.<개정 2020.09.18.>
1. 실업팀, 중·고등학교 및 대학 팀의 감독과 코치로 본 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 단 수영, 사이클, 달리기, 근대5종 2급 지도자 자격으로 코치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본 종목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.<개정 2020.09.18.>
  2.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 단 수영, 사이클, 달리기, 근대5종 2급 지도자 자격으로 코치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본 종목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.<개정 2020.09.18.>
- ③ 본 종목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다음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.<개정 2020.09.18.>

1. 초등학교팀 코치로 본 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<개정 2020.09.18.>
- ④ 본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다음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.<개정 2020.09.18.>
  1. 동호인트라이애슬론클럽 코치로 본 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<개정 2020.09.18.>

## 제2장 경기 지도자 연수위원회

**제5조(근거 및 명칭)** 이 위원회는 본 협회 정관 제45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대한철인3종협회 경기지도자 연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<개정 2020.09.18.>

**제6조(기능)** 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지도자 연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20.09.18.>
2. 전문 스포츠지도사, 생활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실기 구술 자격 검증

**제7조(조직)**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.
-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## 제3장 경기 지도자 연수회

**제8조(과정)** 경기지도자연수회 (이하 “연수회”라 칭한다)과정을 매년 실시하고, 각 급 팀의 지도자는 매년 1회 이상 참여해야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있다.<개정 2020.09.18.>

**제9조(교과)** 교과 과정은 본 협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 단 경기 규칙, 인권, 도핑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20.09.18.>

**제10조(계획)** ① 위원회 위원장은 연수회 계획을 수립하여 본 협회 차기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연수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개최 1개월 전까지 본 협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1조(등록신청)** 경기지도자연수회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 1부.
2. 규정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

### 3. 명함판 사진 2매

**제12조(기간)** ① 경기도자연수회의 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② 제8조 과정과 제9조의 교과는 당해 과정의 내용에 따라 본 협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**제13조(수료증 교부)** 위원회 위원장은 각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.

**제14조(수강료)**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매회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5조(결과보고)** 위원회 위원장은 연수회 종료 후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과정별 연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<삭제 2020.09.18.>

제16조 <삭제 2020.09.18.>

제17조 <삭제 2020.09.18.>

제18조 <삭제 2020.09.18.>

제19조 <삭제 2020.09.18.>

제20조 <삭제 2020.09.18.>

제21조 <삭제 2020.09.18.>

제22조 <삭제 2020.09.18.>

제23조 <삭제 2020.09.18.>

제24조 <삭제 2020.09.18.>

## 제5장 공인 트라이애슬론 교실

**제25조(목적)** 트라이애슬론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편승하여 무자격 교실의 난립으로 인한 트라이애슬론의 이미지 실추를 막고, 자격을 갖춘 트라이애슬론 교실에 본 협회 공인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트라이애슬론 발전과 공인 트라이애슬론 교실의 보호 육성에 기여한

다.

**제26조(선정기준)** ① 체육 시설업 관계 법령에 준한 시설 구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.

② 국가 공인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.<개정 2020.09.18.>

**제27조(공인절차)** ①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사·도협회를 통하여 본협회에 제출한다.

② 선정된 도장에 본 협회 공인증 교부한다.

③ 공인 도장은 소정의 공인료를 공인증 교부 1개월 이내에 본 협회에 납부.

**제28조(공인기간)** ① 공인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공인의 갱신은 공인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류로써 신청한다.

③ 공인료는 100,000원으로 하되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인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6. 1. 23.)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20. 9. 18.)